

충청북도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및 지원 조례  
일부개정조례안

---

# 검토보고서



행정문화위원회  
수석전문위원 연병호

# 충청북도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

## 1. 회부경위

이 조례안은 2012년 4월 9일 정지숙 의원 외 6명으로부터 제출되어 2012년 4월 10일 우리위원회에 회부되었음.

## 2. 제안이유

- 「충청북도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및 지원 조례」는 그 동안 문화체육관광부의 「문화관광해설사 운영 지침」을 근거하여 전문해설 인력을 육성 및 관리하여 법적 근거없이 자율적으로 운영하였으나, 2011년 4월 5일에 개정된 「관광진흥법」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 문화관광해설사 제도가 도입되고, 2012년 1월 2일 “문화관광해설사 교육과정 등의 인증 및 배치·활용에 고시”에 따라 관련규정 정비 및 현행 조례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·보완하려는 것임.

## 3. 주요내용

- 「관광진흥법」 및 같은 법 시행령 개정으로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및 지원에 대한 법적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문화·관광 분야의 전문 해설인력으로 전문성과 자긍심을 강화할 수 있

도록 자원봉사자 개념을 삭제함(안 제2조).

- 전문적이고 질 높은 문화관광해설사를 양성하고 선발을 위하여 문화관광해설사 교육 및 선발 제도의 명확화(안 제5조, 제6조 ).
- 관광안내서비스 인력으로서 전문성과 자긍심 강화를 통한 관광객 유치 확대와 관광산업의 활성화를 위한 포상금 제도를 도입함(안 제10조 신설).

#### 4. 검토의견

금번 개정조례안은 2011년 4월 5일 개정된 「관광진흥법」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 문화관광해설사 제도가 도입되고, 2012년 1월 2일 “문화관광해설사 교육과정 등의 인증 및 배치·활용에 고시”에 따라 관련규정 정비 및 현행 조례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·보완하려는 것으로,

안 제2조에서 자원봉사자 개념을 삭제하고, 안 제5조와 제6조에서 전문적이고 질 높은 문화관광해설사를 양성하기 위해 문화관광해설사 교육 및 선발제도의 명확하게 규정하고, 안 제10조에서는 관광안내서비스 인력으로서 전문성과 자긍심 강화를 통한 관광객 유치 확대와 관광산업의 활성화를 위한 포상금 제도를 도입하는 것으로 특별한 이견이 없음.

붙임 : 충청북도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. 끝